

교직원 복지 규정

- 제정 : 2017. 8. 31
- 개정 : 2018. 9. 1
- 개정 : 2019. 11. 29
- 개정 : 2022. 6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교직원이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이 규정은 본교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교직원에게 적용 한다.

제3조(복지지원 내용) 복지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본 대학 법인에 속한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의 등록금 지원
- ② 삭제
- ③ 교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
- ④ 삭제
- ⑤ 교직원 생일 기념품 지급
- ⑥ 교직원 상해, 질병, 재해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
- ⑦ 교직원 특별활동에 따른 지원 (동호회 등)
- ⑧ 행정부서 야근 및 휴일근무에 따른 식대 지원
- ⑨ 교직원 간담회 경비 지원
- ⑩ 정년퇴직 및 퇴임 교직원 기념품 지급
- ⑪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복지 지원

제4조(지원 금액) ①교직원의 복지증진에 지원하는 금액은 [별표]와 같다.

- ② [별표]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예산 지원) 모든 복지 지원은 매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① 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제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】 <개정 2022. 6. 1>

| 복지 지원 내용 | 지원 금액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본 대학 법인에 속한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의 등록금 지원 | 등록금 전액 | |
| 삭제 | 삭제 | |
| 교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| 보험 가입금액 | |
| 교직원 생일 기념품 지급 | 개인별 최대 100,000원 | |
| 교직원 상해, 질병, 재해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 | 최대 100,000,000원 | |
| 교직원 특별활동에 따른 지원 (동호회 등) | 활동회별 연 최대 10,000,000원 | |
| 행정부서 야근 및 휴일근무에 따른 식대 지원 | 실비 지원 | |
| 교직원 간담회 경비 지원 | 간담회별 최대 10,000,000원 | |
| 정년퇴직 및 퇴임 교직원 감사패 및 기념품 지급 | 감사패 및 꽃다발 : 실비 기념품 : 1,000,000원 | |